

학생생활 기본 규정

제정 : 1997. 09. 10.

개정 : 2015. 02. 06.

전면개정 : 2019. 01. 11.

담당 : 교학팀(02-950-5405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기본이념)	제3조(신분)	제4조(학생증)
제5조(학생증 휴대)	제6조(학생증 대여금지)	제7조(품위유지 및 생활)	제8조(집회)
제9조(게시물, 인쇄물 신고)	제10조(기타사항)	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8조에 따라 학생들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케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2조(기본이념) 학생은 본교의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학교생활에 임하고,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, 학칙 및 본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.

제3조(신분) 본교 학생은 학칙 제21조에 따른 등록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신분이 지속된다.

제4조(학생증교부) ① 제3조에 따라 본교 학생의 신분을 득한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학처에서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.

② 학생증이 파손 및 분실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하며, 이 경우 소정의 발급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.

제5조(학생증 휴대) 학생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본교 교·직원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.

제6조(학생증 대여금지)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할 수 없다.

제7조(품위유지 및 생활) ① 학생은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며,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

- ② 학생 상호간 및 대인관계에 있어서 예의도덕을 지키며 학생본분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학풍조성에 노력해야 한다.
- ③ 학생은 일정한 교회에 출석하여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학과 또는 총학생회에 소속된 단체가 단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,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팀에 [별지 제1호서식]의 학생단체활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
제8조(집회) ① 교내외에서 시행되는 모든 집회는 시행시간 72시간 전에 교학처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학생은 이단으로 규정되거나 이단시비가 있는 교회나 집회 또는 이에 해당하는 강사가 주최나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.

제9조(게시물, 인쇄물 신고) 교내에 게시되는 모든 공고문과 배달되는 인쇄물은 교학처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배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 및 학생복지·지도위원회의 결의로 총장이 승인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준칙은 1997년 09월 10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준칙은 200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준칙은 2006년 0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준칙은 2008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